

청주교육대학교 제규정 관리 규정

제정 2016. 4. 27. 규칙 제1412호

개정 2017. 8. 2. 규칙 제1445호

개정 2020. 8. 12. 규칙 제1545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(부속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제규정의 제·개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8.12.)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제규정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, 행정규칙 등을 본교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칙 및 규정을 말한다.(개정 2020.8.12.)
2. “부속시설”이라 함은 청주교육대학교 학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제 규정의 제·개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(개정 2020.8.12.)

제2장 규정심사위원회

제4조(설치) 본교 제 규정의 제정(개정)에 관하여 교수회의 또는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교에 규정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.(개정 2020.8.12.)
- ③ 위원은 총무팀장, 경리팀장, 시설1팀장, 교무팀장, 학생팀장, 기획팀장으로 한다.
- ④ 간사는 안전제출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제규정안의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법령체계 검토(개정 2017.8.2.)
2. 제규정안의 자구수정 및 조문정리

3. 학내 제규정의 해석
4. <삭제>(개정 2017.8.2.)
- ② <삭제>(개정 2017.8.2.)

제3장 절차

제9조(안건제출) 각 부서 또는 부속시설에서 입안된 제규정안을 위원회에 부의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규정 제정 또는 개정(안)
2. 신·구조문대비표
3. 관련 규정(개정 2020.8.12.)
4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(협의 등) ① 제규정안을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및 부속시설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규정안을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규정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 5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(신설 2020.8.12.)

제11조(의견청취) 제규정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.

제4장 제규정의 관리

제12조(규정의 명칭)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은 “청주교육대학교○○○○규정”이라 한다.

제13조(규정의 번호)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에는 시행일자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.

제14조(규정 관리 등) 총무처장은 규정집을 관리하고 제규정의 제·개정안 원본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8.12.)

제15조(시행일) 제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5장 보칙

제16조(제규정의 개정제안) ① 본교의 모든 교직원은 소관업무 처리 또는 기타사유로 제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의 개정안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(개정 2020.8.12.)

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개선안이 채택되어 행정능률 개선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.

부 칙(2016. 4. 27. 규칙 제1412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8. 2. 규칙 제1445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8. 12. 규칙 제1545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